

정의 자동차의 운전이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9.9. 94도1522).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514쪽

15. 손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도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경리장부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누계가 잘못된 부분을 찢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타인의 등기권리증을 민사사건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문서손괴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12.7. 93도2701).

- ①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79.7.24. 78도2138).
- ②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찢어버린 부분이 진실된 증빙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기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어 찢어버린 부분 그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89.10.24. 88도1296).
- ③ 피고인이 자기가 속하고 있는 중중 소유라고 믿고 있는 임야에 대한 소유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그 소지인이 제시하자 이를 가지고 가서 위 중중이 원고가 되어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소위는 문서은닉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8.28. 79도1266).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680쪽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형백화점이 정상판매가격을 높여 표시해 놓고 대폭적인 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공사한 건물의 대장상 평수보다 실제상의 평수가 많아 실제상의 평수에 따른 공사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에게 진정하겠다고 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 ③ 乙이 甲의 위임을 받아 토지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해온 경우에 乙이 토지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면 토지잔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직원이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해설] ② 피고인이 공사한 건물의 대장상 평수보다 실제상의 평수가 많아 실제상의 평수에 따른 공사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에게 진정하여서라도 대장상의 건물평수가 부족함을 밝혀줬다고 하는 의사표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협박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10.30. 79도1660).

- ①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번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2.9.14. 91도2994).
- ③ 피고인이 공소의 甲의 위임을 받아 동인이 제공한 토지매입자금을 가지고 동인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하는 등 토지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온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토지매수인들로부터 甲을 위하여 지급받아 보관하던 금원 중에서 이 사건 토지 잔대금을 그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비록 甲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9.28. 82도1486).
- ④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3.12. 98도4704).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584쪽

17. 도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에 의함)

- ① 도박의 당사자는 필요적 공범이며 대항범이 된다.
- ②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 ③ 사기도박의 경우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④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③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1.13. 2010도9330).

☞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

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도박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도박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2010도9330).

- ① 도박의 당사자는 필요적 공범이며 대항범으로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이때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요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예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사안에서, 도박개장죄를 인정한다(대법원 2009.2.26. 2008도10582).
- ④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4.23. 2002도2518).

☞ 형법판례매려잡기!(도서출판 배움) 792쪽

18.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약국감시원이 무허가 약국 개설자를 적발하고 상사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약국을 폐쇄토록 하였으나 수사관서에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사법경찰관리가 경미한 범죄혐의사실을 검사에게 인지 보고를 하지 않고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경우
- ③ 일직사관이 순찰 및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무장소 부근에서 잠을 잔 경우
- ④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 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 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한 경우

[정답] ④

[해설] ④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12.21. 90도2425).

- ① 약사 감시원이 무허가 약국개설자를 적발하고 상사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약국을 폐쇄토록 하였다면 수사관서에 고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직무를 유기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69.2.4. 67도184).
- ②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층근의무를 게을리한 일체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사법 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형사

죄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6.8. 82도117).

- ③ 피고인이 순찰 및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잠을 잔 것은 일직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층근의무에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하겠으나 근무장소에서 유사시에 깨어 직무수행에 임할 수 있는 상황(상황실로부터 피고인이 누운 침상까지는 2m 정도의 거리로서 판자칸막이가 있는데 불과함)에서 잠을 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일직사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4.3.27. 83도3260).

☞ 형법판례매려잡기!(도서출판 배움) 812쪽

19.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내어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
- ②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진 경우
- ③ 의경이 자동차운전자에게 후렛쉬봉에 의한 3회에 걸친 음주측정 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다시 음주측정기로 검사하자고 말하자 지나친 단속에 화가 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의경의 뺨을 때리고 떡살을 잡고 그에게 전치 10일간의 전경부찰과상을 입게 한 경우
- ④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정답] ①

[해설] ①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자기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었다면 이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피요구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임의동행하려는 직무행위는 끝난 것이고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 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놓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에 대한 유행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76.3.9. 75도3779). ☞ 바보같은 놈 사건

- ②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대법원 1981.3.24. 81도326).
- ③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경찰공무원이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던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후렛쉬봉에 두 차례 입김을 불게 했으나 잘 알 수 없어 동료경찰관에게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 역시 알 수 없어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요구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 음주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한 위 경찰공무원의 행위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4.28. 92도220).
- ④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

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법원 1999.9.21. 99도383). ☞ 8월의 크리스마스 사건

☞ 형법판례매려잡기!(도서출판 배움) 850쪽

20. 위증죄와 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에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에서 허위는 신고자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실을 다소 과장하는 경우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위증죄에서 범인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사건에 관한 공판절차에서 위증하도록 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④ 무고죄에서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甲이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4. 2002도5939).

- ①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1984.2.28. 84도114).
- ③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1.27. 2003도5114).
- ④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2.9. 95도2652).

☞ 형법판례매려잡기!(도서출판 배움) 892쪽

**윤형채 2012년 2차시험대비 형법판례특강
형법판례매려잡기특강**

2012년 5월 5일 예정

- 1. 2011년 1차, 2차시험에서 판례의 98%와 100% 적중률!
- 2. 직접 교재로 확인가능 합니다!!!
- 3. 판례를 알면 형법이 보이고, 고득점이 보이고 합격이 보인다!
- 4. 처음 형법을 공부해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도 쉽게 판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2년 2차시험대비 형법총정리마무리특강
형법조문-형법이론 및 학설-핵심판례**

2012년 6월 2일 예정

- 1. 형법 법조문 완전정복!
- 2. 형법이론 및 학설 마무리정리!!
- 3. 출제가능 핵심판례 요약정리!
- 4. 2011년 최신판례 완벽정리!
- 5. 형법 쪽집게 암기사항 마무리!

**2012년 2차시험대비 형법총정리마무리특강
형법조문-형법이론 및 학설-핵심판례**

2012년 7월 예정

- 1. 형법 법조문 완전정복!
- 2. 형법이론 및 학설 마무리정리!!
- 3. 출제가능 핵심판례 요약정리!
- 4. 2011년 최신판례 완벽정리!
- 5. 형법 쪽집게 암기사항 마무리!

***** 윤형채 형사법 수험서 *****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음 2011. 제5판]
- 2. PASS 핵심 경찰형법[도서출판 배움 2011. 제7판]
- 3. 형법, 형소법용어해설집[도서출판 배움 2011. 초판]
-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10. 개정판]
- 5. 형법조문과 판례[도서출판 예음 2010. 초판]
-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도서출판 배움 2012. 제3판]
-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3판]
-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11. 제3판]
- 9.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매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11. 제3

판]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 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카페

<http://cafe.naver.com/gosicore.cafe><http://cafe.daum.net/new-police><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gosicore@naver.com

윤황채 형법고득점 7단계공부전략**1단계 : 교과서 공부 (PASS 핵심형법)**

1순환 : 기초 법률용어공부(형법적응하기)

2순환 : 형법 기본학습(형법내용보기)

3순환 : 형법 심화학습(형법깊이보기)

2단계 : 기초형법 문제풀이(기본문제)**3단계 : 판례공부(판례때려잡기)****4단계 : 학설-이론-법조문 심화학습(형법총정리)****5단계 : 형법기출문제풀이**

1순환 : 경찰기출문제(순경,경찰간부,경찰승진)

2순환 : 기타기출문제(검찰직,법원직,법원고시,사법시험)

6단계 : 형법기출지문정리(기출지문OX정리)**7단계 : All Pass 형법문제풀이**

1순환 : 진도별 문제풀이(6회)

2순환 : 심화문제풀이(총론1회, 각론1회)

3순환 : 종합문제풀이(1회)